

아내강간 발생과 관련 변수 파악 및 인식

신성자*

이 연구는 아내강간이란 단독주제로는 선구적 연구로 아내강간의 발생정도, 관련 사회계층적 배경, 성장시 가정폭력 배경, 그리고 아내강간에 대한 인식조사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 기혼남성들 중 약 42.4%가 아내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수입이 적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많은 남성이 아내강간 경향이 높고, 아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일수록 남편의 아내강간 행동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중요한 변수가 경제생활 수준으로 확인되어, 아내강간 발생을 예측하는데 현재 부부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녀 성별간에는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내강간의 행동에 대해 많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기혼남성과 여성이 아내강간에 대해 수용적이었다. 특히 아내강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남성보다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여성의 아내강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져 아내강간을 훨씬 더 수용하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부부폭력 전반에 대한 연구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과 함께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폭력의 주요 하위 영역인 부부의 성폭력 문제인 아내강간(*wife rape*) 문제는 여전히 연구영역에서 간과되어, 지금까지 연구의 단독 주제로서 아내강간에 대한 학계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감추어졌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여권론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성폭력, 부부폭력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 1995. 1. 5. 개정법 4933호)과 가정폭력방지 관련특별법(1998. 7. 1. 시행)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내 강간을 주요한 성폭력 및 부부폭력 문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노력이 함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국내에서 아내강간이라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아내강간을 성폭력문제로 간주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내강간이 심각한 성폭력으로 사회문제로 드러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사회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에 대한 프라이버시(*sexual privacy*)는 결혼생활에서의 마지막 비밀스러움이라는 인식과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행동은 합법적인 권리(*entitlement*)과 의무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관계에서의 강제된 성(*forced sex*) 행동을 강간으로 간주하고 중요한 성학대문제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과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부간의 성행동은 모든 사람의 주요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일로 인식하여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조사협조요청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아내강간에 대한 연구 시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내강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남편으로부터의 강제된 성행위가 아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는 사실에서 한층 더 증대된다. 구미의 여러 선행 연구

자들(Campbell, 1989; Finkelhol & Yllö, 1983; Hanneke & Shields, 1983; Resnick et al., 1991; Russel, 1990; Adams, 1993)이 이미 배우자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해로운지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Kennedy, 1996: 59).

배우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여성들은 메스꺼움, 토햄, 아림, 타박상, 근육긴장, 두통, 심한 피로, 성기관련 부분의 상처, 방광염 등의 문제 등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 불임까지를 포함하는 신체적 영향을 받고 있다(Campbell & Alford, 1989: 948). 불안, 충격, 강한 두려움, 우울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증가, 자살 충동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질병증가 그리고 정신·신체적 각 증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Russel, 1990).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반강간(stranger rape)에 비해 ‘너무도 잘 아는’(known entity) 배우자에게 당하는 강간은 피해여성에게 덜 문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myth)이다. 아내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일반강간을 당한 여성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학자들(Finkelhor & Yllö, 1985, Russell, 1990; Watley, 1993)이 주장하고 있다(Kennedy, 1996). 자신에게 중요하고 친밀한 존재인 배우자(남편)로부터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행위가 강제될 때,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인 후유증을 야기한다.

아내강간이 여성들에게 주는 상처가 매우 크고 그 후유증이 여러 형태로 여성들 자신의 삶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아내강간문제 예방과 대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내강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수립을 위해 관련학계에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다각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아내강간문제의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먼저 세 가지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아내강간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경험을, 그리고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피경험을 함께 조사한다. 아내강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남

편이나 아내 한쪽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고, 기혼부부를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강간경험과 피경험을 동시에 파악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정보의 타당성을 높인다. 둘째, 아내강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아내강간의 다양한 유형별로, 성별로, 그리고 아내강간 경험과 피경험 정도 등에 따라 각기 서로 비교·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들의 다양한 사회계층적 배경 및 성장시 가정폭력 배경이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아내강간 발생의 주요 예측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주제인 아내강간 문제를 탐색하고 파악해 보려는 시도는 앞으로 후속연구가 활발히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아내강간에 대한 선행연구

1) 아내강간 개념에 대한 이해

아내를 강간하면 범죄가 성립되는가? 미국의 25개 주를 비롯하여 캐나다 1983년 개정형법, 스웨덴 1965년 개정형법(성교강제죄: 형벌이 강간보다 가벼움), 노르웨이, 덴마크(1974년 최초의 유죄판결), 벨기에, 오스트리아(1976년 일부 주) 등의 서구에서는 아내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아내강간에 대한 법적 처벌장치를 만들게 된 배경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성(性)의 자결권이나 신체의 자유의 보호”에 있다(박동섭, 1997: IV-27). 우리나라에서는 법조문에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1970. 3. 10. 70조 29 판결집 18권 ①형 33면)에서는 아내강간을 강간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내강간(결혼강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박동섭, 1997: IV-27). 아내강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설정되지 못한 것은 아내강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결혼관계에서 오히려 정상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규정에 있어 어떤 행동특성을 아내강간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구사회

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예컨대, 아내강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 미국에서도 많은 주가 강간을 강압에 의해 행해지는 성교라는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섹스, 즉 오랄 섹스(*oral sex*) 또는 애널 섹스(*anal sex*)는 이탈적 성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Hannke & Shield, 1985: 452).

아내강간을 규정하는 핵심단어인 힘(*force*)과 강압(*coercion*)에 대한 의미 해석에서도 의견이 다소 불일치되고 있다.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결혼관계에서 존재하는 남녀간의 세력(*power*) 차이를 고려할 때, 남편과 아내의 힘의 불균형이 클수록, 강압과 강제된 성행위의 개념을 보다 광범한 범위까지 확장하여 포함시켜야 된다고 Finkle과 Yollo(1985)는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내키지 않고 거절하고 싶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낀 경우, 비록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남편에게서 구체적으로 없었더라도 성행위를 강제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다(Finkle & Yollo, 1985: 452).

실제로 아내강간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학자들에 따라 아내강간 유형 구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아내강간에 대해 매우 의욕적인 임상개입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Kennedy가 제시하는 세 가지의 전형적인 아내강간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Kennedy, 1996: 14~17).

첫번째 '강압적 강간'(*force-only rape*)은 세 유형 중에 상대적으로 덜 난폭한 형태의 성폭력이다.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강간에 아내가 완강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했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아내의 두려움이 무엇보다는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실제로 아내강간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Campbell과 Alford가 조사한 대상자(115명) 중 약 절반(49.6%)이 성행위를 거절하면 남편이 때릴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1989: 948).

두번째 유형의 아내 강간은 '아내구타 강간'(*battering rape*)이다. 이 경우 심하게 구타당한 결과로 눈멍, 골절, 머리에 피뭉치 엉김 그리고 칼자국 상처 등을 남기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적어도 1/3 이상(36.7%)의 여성의 실제로 성행위를 거절했다고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하였고, 아내강간을 경험한 여성 중 약 13%는 남편이 총, 칼, 기타 무기 등으로 위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Campbell & Alford, 1998: 948).

신체적 폭력이 성적 폭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박영규, 1994; 손정영, 1998)을 인식할 때,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는 아내강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진다. 송정영(1998)의 조사에서는 성적 폭력이 심리적 폭력(.94), 신체적 폭력 (.92) 보다 약간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박영규의 조사에서는 부부간의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497)이 상징적 폭력 (.472)보다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단순 신체구타만 당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강간을 함께 겪는 아내들이 빈약한 신체 이미지와 낮은 자아존중감 문제로 더 고통받게 된다 (Campbell & Alford, 1989: 949).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구타동반 성학대 문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진다.

세번째 유형은 ‘가학적 강간’(*sadistic rape*)이다.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착적(*perverse*) 행동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포르노그래피를 가학적 아내강간 행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내에게 제3자와의 성행위를 강요하고, 남편 자신은 지켜보는 행위와 같은 가학적 강간행위와 몸을 끈으로 묶는 행위도 가학적 강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내강간 개념을 이해할 때 강압에 의한 성기삽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원치 않는 강압적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단순 지인강간(*acquaintance rape*)에서보다 결혼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오럴 섹스나 애널 섹스를 실제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Peacock, 1995)에서 뒷받침된다(Kennedy, 1996: 19). 따라서 아내강간을 정의할 때 다양한 형태의 섹스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섹스행위이든지 배우자(아내)가 거절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남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섹스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내강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내강간을 내가 거절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어떤 형태이든지 힘을 동원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아내강간에 대한 인식 : 수용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 정도

Kelly(1988)는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의 강제에 의해서 당한 성행위를 강간으로 인식하고 규정짓기까지는 대개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결혼관계에서 친밀하고 애정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할 배우자가 강압적

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제할 때, 첫번째 단계에서 여성들은 그러한 행위가 정상적, 수용적 또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학대적인(*abusive*)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전문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제3단계에 이르며, 남편으로부터의 강제된 성행위가 특별한 형태의 명백한 학대라고 비로소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한다(Kennedy, 1996: 39).

이처럼 여성들이 아내강간이라고 스스로 규정짓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데는 결혼관계 안에서의 남편 주도의 성행위(*sex*)는 설사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아내의 의무라고 믿는 그릇된 성규범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들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elly(1990)는 여성들이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여러 선행연구(Frieze, 1983; Russell, 1990; Peacock, 1995)의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Kennedy, 1996: 39~41). Campbell과 Alford(1989:947)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87.4%)가 자신들의 남편은 원할 때는 언제나 섹스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기혼여성들 자신의 인식문제뿐만 아니라 기혼남성들의 잘못된 인식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내강간 행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구된 바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아내강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내강간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를 기혼남성,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알아보고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아내강간에 남성과 여성의 태도를 조사해 보려는 연구시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아내강간의 발생

구미에서도 부부폭력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 및 정서적 폭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한 것에 비해 아내강간과 같은 부부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아내강간 관련 여러 연구(Frieze, 1983; Russell, 1990; Peacock, 1995; Kennedy, 1996)에서 발표된 아내강간 발생률은 연구대상 선정방법, 아내강간 유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내강간 발생률은 대체로 약 14%에서 40%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

지 국내에서는 아내강간을 연구의 단독주제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부부학대 또는 부부폭력문제를 조사하면서 부부간의 성폭력 발생률에 대해 보고한 극히 소수의 연구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손정영(1998)은 서울·대구지역의 기혼 남녀 280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성적 폭력을 포함한 부부학대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부부성폭력 발생률은 아내집단에만 한정되어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경험 정도를 약한 성폭력과 심한 성폭력을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약한 성폭력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은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 관계를 강요하는 것,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 성관계, 그리고 배우자가 싫어하는 체위의 성행위 강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심한 성폭력은 무력, 위협 등이 동반된 성행위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개 문항 내용은 송정영(1997)이 Straus의 CTS1(Conflict Tactics Scale) 문항을 요인분석 등을 통해 CTS2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이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응답자들이 보고한 부부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51.4%)과 심리적 폭력(81.4%)에 비해 다소 낮은 33.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약 33.6%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부인이 섹스를 원치 않는 데도, 또는 부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강제 성관계를 시도한 가벼운 성적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32.9%, 무력 또는 심한 위협 등을 가한 심한 성적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7.9% 정도였다. 이 결과는 손정영(1997)이 이전에 시행한 조사 결과(전체 부부성폭력 47.5%, 심한 성폭력 20.1%, 약한 성폭력 43.7%)에 비해서 다소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및 교육수준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연구자는 해석하고 있다.

박영규(1994)는 남편만 대상으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부부폭력을 Mashall(1992)의 SVAWS(Severity of Violence Against Woman Scale)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여 부부간에 일어나는 성적 폭력(*sexual coersion*) 발생률을 측정하였다. 송정영이 사용한 성적 폭력을 측정하는 CIS2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7개)보다 축소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박영규(1994)의 조사에서는 조사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인 55.1%가 부부간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률(55.1%)이 상징적 폭력(80.5%)보다는 훨씬 낮았지만, 신체적 폭력(35.8%)보다는 훨씬 높았다.

각 연구에서 보고하는 이러한 발생률 차이는 부부 성폭력 대상자 선정문제, 부부 성

폭력 발생 평가기간의 차이, 성폭력 유형, 또는 부부가 부부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는 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비록 극소수의 연구에서 부부의 성폭력 경험정도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내강간이 심각한 아내학대 문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소개한 두 연구(박영규, 1994; 손정영, 1997)는 모두 아내강간 경험을 한쪽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함께 조사 대상자로 포함시켜서 실제로 아내강간을 행한 기혼남성들의 경험과 실제로 당한 기혼여성들의 피경험을 함께 비교하여 분석할 때 아내강간 발생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4) 아내강간의 주요 원인

Kennedy(1996: 20~23)는 아내강간의 발생원인을 성역할 사회화의 개념적 틀 안에서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결혼관계에서의 성행위를 법적 권리로 생각하여 섹스를 권한(*entitlement*)으로 생각하는 데 원인이 있다. 합법적인 결혼제도 안에서 성행위를 남성에게는 권한이고 여성에게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는 아내의 정서와 자아 존중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강압적인 성폭력을 남편이 쉽게 행사하게 하고 있다.

둘째, 부부간에 성학대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부부폭력 희생자를 위한 임상개입집단에서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이유로 남편이 자신(아내)에게 벌을 주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피해여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을 Kennedy(1996)는 지적하고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투, 불만 등을 성적으로 벌주는 행위는 성적행위를 수행하고 주도하는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다. 다른 어떤 형태의 아내에 대한 보복보다도 성적 방법은 남성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부부간의 강간은 통제를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일어난다. 즉, 아내강간을 남성들은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Gelles(1977)의 연구에서도 아내를 통제하기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남편

의 성폭력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힘과 통제를 행사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아내강간 피해여성들의 대부분이 경험에서 드러나고 있다(Hanneke & Shield, 1985: 454).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은 단순히 성 문제가 아닌 바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의 표현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문제시해야 한다고 폐미니스트들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성 문제에 관한 한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상당히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 성규범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성적 상황에서의 남성들의 행동 주도를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신성자, 1997). 특히 결혼 관계에서 성적 행동의 주도를 남성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가 여성을 지배하려는 통제수단으로서 남성들에게 성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5) 아내강간 발생과 사회계층적 배경 및 성장시 가정폭력 배경

아내강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사회계층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소 상반되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oron(1980)의 연구에서는 나이, 교육, 수입, 가족수 등은 아내강간 발생과는 무관하고, 집 밖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아내가 아내강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Frieze(1983)는 집 밖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여성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덜 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 전 교제기간이 짧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더 많이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Frieze는 주장하고 있다. Doron과 Frieze 모두 아동 시절 학대 경험에 있는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훨씬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Hanneke & Shield, 1985: 453~454), 아내 강간 발생연구를 위해서는 남편의 성장시 가정환경 특성뿐만 아니라 아내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함께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국내에서 보고된 선행연구 조사(손정영, 1998: 102~103)의 결과에서는 남편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아닌, 남편의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이 부부성폭력 발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체적 폭력 및 정서적 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룬 부부폭력에 남성의 어린 시절 폭력경험보다는 폭력관찰이 오히려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일부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관성 있는 발견이다(김재엽, 1998: 111~112).

월소득이 낮을수록 아내강간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월소득과 아내 강간 발생간의 부적상관관계를 손정영(1998)과 박경규(1994: 79)의 조사결과에서 보고하고 있다. 월소득 변인은 손정영 연구조사에서 다른 부부폭력, 즉 신체적·정서적 폭력 발생과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였지만 성적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어 주목을 끈다. 이 외에 연령도 성폭력 발생 관련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성적으로 왕성한 20대 부부간에 성적 폭력이 30대 이상 부부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규, 1997: 79).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결과가 다소 상이하지만, 국내외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어린 시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폭력 경험과 재정 관련 변인 등이 부부간의 성적폭력 발생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에서 아내강간 경험자(남성)와 피경험자(여성)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내강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적 변수 및 성장시 가정폭력 배경 파악을 부부 한쪽편이 아닌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아내강간 발생에 미치는 남편과 아내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의 표본은 대구광역시 소재 기혼부부들로써 99명의 기혼남성과 125명의 기혼여성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선정을 위해서는 2개 구(區) 단위에 소재한 유아원,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임의선정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하였다. 관련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주소를 파악한 뒤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우송하였다. 설문지 우송시 부부 각자에게 별도로 마련된 반송봉투를 함께 동봉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무기명으로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청하였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특히 부부간의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지에 이에 대한 설명과 설문지 작성시 부부간에 지켜야 할 규범과 준수사항을 설문지 설명란에 명시하였다. 조사는 1998년 12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설문지 회수율은 저조하였다. 기혼남성의 응답률(약 25%)은 여성응답자(약 31.3 %) 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지 문항 내용이 부부의 성폭력에 관한 내용이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노출을 심리적으로 매우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한층 더 작용하여 설문지 조사 참여가 훨씬 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본선정이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임의성이 높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2) 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 조사될 주요 종속변수는 아내강간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아내강간 경험(남성대상)과 피경험(여성대상), 아내강간 행위에 대한 수용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다. 이를 주요 종속변수와 강압에 의한 강간, 구타동반 강간과 가학적 강간과의 관련성과 세 유형의 강간을 통합한 전체 아내강간(*overall wife rape*)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유형별 행동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행연구(신성자, 1999)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세 가지의 유형을 묘사한 비네트(vignettes) 내용을 설문지에 기술하였다. 응답자들이 각 비네트에서 묘사한 상황을 읽고, 세 가지 비네트에서 묘사된 상황을 실제로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경험(또는 피경험) 하였고,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의 필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아내강간 경험(남성대상) 및 피경험(여성대상)에 대한 조사는 전혀 경험이 없음(0점)부터 자주(4점) 까지 리커드 방식에 의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분석상 편리를 위해서 아내강간 경험정도(0=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집단, L; 1=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집단, L) 또는 피경험 정도(0=상대적으로 피경험이 많은 집단, H; 1=상대적으로 피경험이 적은 집단, L)에 따라 dummy 변수로 재구성(recoding)하여 측정하는 분석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은 아주 동의하지 않는 편(1점)에서 아주 동의하는 편(5점) 까지 리커드방식에 의해 5가지 중 하나를 응답자가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t 검증을 주로 사용하였다.

아내강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계층적 변수로는 나이,

결혼 연수, 본인 및 배우자 교육배경, 본인 및 배우자 직업, 월소득, 경제수준, 종교, 본인 및 배우자 신앙생활 및 활동정도 등 11개 독립변수들을 구성하였다. 성장시 가정 폭력배경에 관련된 변수로는 성장시 부모로부터 받은 물리적 폭력경험과 성장시 부모들끼리의 부부폭력의 관찰경험 등으로 구성된 2개의 독립변수를 포함시켰다. 이들 13 개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아내강간 경험과 피경험과의 관련성을 기본적으로 Chi-Square,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Logistic 회귀 분석하여 아내강간 발생에 관련된 주요 예측 변수 등을 파악해 보았다.

3) 연구질문

이 연구는 아내강간에 대한 단독연구가 전무한 국내에서 외국의 선행연구와 국내의 부부학대 및 폭력에서 성적폭력을 부분적으로 다룬 극소수 최근 연구결과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 ① 아내강간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유형별 아내강간은 각기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
- ② 아내강간 행위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각각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세 가지 유형의 아내강간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수용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어느 정도 다르게 생각하는가?
- ③ 아내강간 경험(남성) 정도와 피경험(여성) 정도에 따라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정도와 처벌필요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④ 아내강간 경험과 피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계층적 변수는 무엇인가?
- ⑤ 성장시 가정폭력배경은 아내강간 경험과 피경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4. 자료분석의 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전체 사례 수는 224명으로 기혼여성이 125명과 기혼남성이 99명으로 구성되었다. 남녀 응답자들의 나이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녀 응답자들 모두 30대가 가장 많고(남성 53.9%, 여성 58.1%), 그 다음으로 40대가 많은 편이다(남성 35.4%, 여성 26.6%). 남성은 20대(4.2%)가 가장 적은 반면, 여성은 50대 이상(4.8%)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 남성의 평균나이(38.76세)는 여성의 평균 나이(36.68세)보다 약 2살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들은 남성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다. 남성응답자 중 약 68.4%가 대졸 이상이지만 여성응답자는 약 44.5%가 대졸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남(97%), 여(91%) 응답자들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응답자 중 절반 이상(53.2%)이 가사에 종사하는 전업주부이다. 남(42.4%), 여(13.5%) 응답자 모두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고, 남성응답자의 경우 상업·서비스직(23.2%), 기술직(13.1%), 전문직(9.1%), 그리고 근로노동직(7.1%) 순으로 분포되었다. 무직인 경우도 5.1%였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사무·관리직을 제외하고는 전문직(5.6%), 상업·서비스직(5.6%), 농·임·축·수산업(3.4%), 그리고 기술직(2.2%) 순으로 분포를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남성응답자들에 비해 밖에서의 직업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진하다.

가계 월소득을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남성은 약 6.4%이고, 여성은 약 3.5%였다. 평균 가계 월소득은 남성응답자들이 2,341,277원을, 여성응답자들이 223,522원이라 응답하여 남성응답자들이 여성응답자들보다 평균 11만 원 정도 더 높은 평균가계 월소득을 보고하고 있다. 남녀 응답자들 중 약 10%(10.6%, 9.7%) 전후가 400만 원 이상의 가계 월 소득을 보고하고 있다. 남성응답자들 중 약 30% 이상과 여성응답자들 중에 약 23.5%가 다소 가난한 편이라고 대답하였고, 응답자들 중 절반 이상(남성 52.5%, 여성 61.8%)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보통 정도라고 대답했다. 남성 중 17%, 여성 중 약 19.6%가 생활이 다소 풍족하다고 대답했다.

남성 중 약 35.4%가 종교가 없었고, 여성 중 약 24.8%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교를 가진 경우, 남성(44.4%)과 여성(40%) 모두 불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남성 11.1%, 여성 20.8%), 천주교(남성 8.1%, 여성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활동) 정도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대체로 더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었던 응답자들이 약 24% 정도 되었고, 남성(6.1%)이 여성(2.4%) 보다 학대받은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응답자 중에 약 36.4%, 그리고 여성응답자 중에 약 41.6%가 성장시에 부모들끼리의 부부폭력이 전혀 또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성(56.4%)과 여성(51.2%) 모두 약 절반 이상이 성장시 부모들의 폭력을 드물게 또는 가끔 목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약 7% 이상의 남녀 응답자들은 모두 부모들의 부부폭력을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남성응답자들이 여성응답자들 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성장 때부터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장시 부모들끼리의 부부폭력 발생을 보고한 남녀 응답자들의 비율은 서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경험과 부모들의 부부폭력 관찰 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응답자들의 대답이 비교적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2) 아내강간 발생정도 : 아내강간 경험과 피경험

남성응답자들 중에 약 42.4%가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어떤 유형이든지 아내강간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여성응답자들 중 약 35.8%가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강간의 유형별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강압에 의한 강간(*force-only sex*)이 기혼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35.4%), 구타동반강간(12%)과 가학적 강간(10.4%)과 같은 상대적으로 행동특성이 심각한 형태의 아내강간도 평균 10명 중 적어도 1사람 이상이 실제로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대체로 남성응답자들이 보고한 아내강간 경험 정도보다 여성응답자들이 아내강간을 당한 경험 정도는 다소 낮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실제로 아내강간을 했던 남성들이 아내강간 경험을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고, 설문지 응

〈표 1〉 남성의 아내강간 경험 및 여성의 피경험

경험정도		강간종류		강압에 의한 강간 (Forced Sex only)		구타동반강간 (Battering Rape)		가학적 강간 (Sadistic Rape)		전체 강간 (Overall Rape)	
		경험	피경험	경험	피경험	경험	피경험	경험	피경험	경험	피경험
		남(%) N=99	여(%) N=123	남(%) N=99	여(%) N=123	남(%) N=99	여(%) N=125	남(%) N=99	여(%) N=125	남(%) N=99	여(%) N=125
유경험	무경험	없다	62 (64.6)	82 (65.6)	87 (87.9)	112 (89.6)	88 (89.8)	117 (93.6)	63 (63.6)	86 (68.8)	
	유경험	지난 2년간 한두 번 정도	7 (7.1)	8 (6.4)	3 (3.0)	4 (3.2)	3 (3.1)	4 (3.2)			
		아주 드물게	25 (25.3)	20 (16.0)	6 (6.1)	7 (5.6)	1 (1.0)	2 (1.6)	42 (42.4%)	46 (35.8%)	
		가끔	4 (4.04)	13 (10.4)	2 (2.0)	1 (0.8)	4 (4.1)	1 (0.8)			
		자주	1 (1.01)	2 (1.6)	1 (1.0)	1 (0.8)	2 (2.0)	1 (0.8)			
	있다		37 (35.4)	43 (34.6)	12 (12.1)	13 (10.4)	10 (10.4)	8 (6.4)			

답에 비교적 정직하게 대답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아내강간에 대한 남녀의 수용 정도와 처벌 필요성

아내강간에 대한 남녀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아내강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와 아내강간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아내강간 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강압에 의한 강간에 대해서는 남성응답자 중 약 20.4%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구타강간(4.0%)과 가학적 강간(2.0%)은 극히 일부 남성들만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대부분 남성이 구타동반 강간(95.7%)과 가학적 강간(87.9%)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상한 대로 여성응답자들이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 정도는 남성응답자들보다 더 낮았다. 강압에 의한 강간에 대해서도 82.9%의 여성응답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표 2〉 다양한 유형의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도와 처벌의 필요성

유형	집단	남 성(%)			여 성(%)		
		N	M	P	N	M	P
강압에 의한 아내강간	아내강간 수용	71 (72.4)	7 (7.1)	20 (20.4)	102 (82.9)	10 (8.1)	11 (8.9)
	처벌제도 필요성	49 (49.5)	22 (22.2)	28 (28.3)	35 (28.2)	33 (26.6)	56 (45.2)
구타동반 아내강간	아내강간 수용	90 (95.7)	5 (5.1)	4 (4.0)	115 (92)	5 (4)	5 (4)
	처벌제도 필요성	30 (30.3)	15 (15.2)	54 (54.5)	19 (15.3)	24 (19.4)	81 (65.3)
가학적 아내강간	아내강간 수용	87 (87.9)	10 (10.1)	2 (2.0)	120 (96)	3 (2.4)	2 (1.6)
	처벌제도 필요성	31 (31.3)	14 (14.1)	54 (54.5)	33 (26.4)	19 (15.2)	73 (58.4)

주 : 집단구분 : N=동의하지 않은 집단, M=중간집단, P=동의하는 집단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들 중 약 8.9%는 강압적인 강간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구타동반 강간(92%)과 가학적 강간(96%)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여성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극소수의 여성응답자들이 구타동반 강간(4%)과 가학적 강간(1.6%)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 가지 아내강간 유형 중에서 강압에 의한 강간(*force-only sex*)에 대해서 남녀 모두 가장 수용적이었다. 그리고 가학적 강간보다는 구타동반 강간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 를 보여주었다. 비록 남성응답자들에 비해 여성응답자들이 아내강간에 대해 더 부정 적인 입장을 표현했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아내강간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특히 강압적인 강간에 대해서는 상당수(약 9%)의 여성이 오히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로 제기된다. 강압에 의한 강간에 대해서는 남성응답자들 중에 20.4% 정도가 수용적이었는데 비해서, 49.5%의 남성응답자들이 처벌의 필요성에는 부정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남성응답자 중 72.4%가 강압에 의한 강간에 대해서 부정 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28.3%만이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아내강간 행 위를 주도하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하고 싶어하는 방어적 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구타동반 강간의 경우에도 남성응답자들 중 절대 다수(95.7%)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약 54.3%의 남성만이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타동반 아내강간 행위의 경우도 극소수(4.0%)만이 수용적이었지만, 30.3%의 남성응답자들이 처벌이 필요없다는 쪽을 지지하였다. 가학적 강간에서도 구타강간과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내강간 행위에 대한 남성들의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남성응답자들은 아내강간에 대한 자신들의 수용 정도와 관련하여 처벌의 필요성에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여성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아내강간에 대한 여성응답자들의 수용정도에 비해서 남성응답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2.9%의 여성응답자들이 강압에 의한 아내강간 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약 45.2%의 여성이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구타동반 강간에 대해서도 대다수(92%)의 여성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비해, 약 65.3% 여성이 처벌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96%)의 여성이 가학적 강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약 58.4%의 여성응답자들이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응답자들도 아내강간 행위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에는 훨씬 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성응답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응답자들이 처벌의 필요성을 훨씬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 정도뿐만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남녀 응답자들간에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동특성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강압에 의한 강간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타를 동반한 아내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지만,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훨씬 자기 방어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남녀간의 입장의 차이가 뚜렷하다. 한편 가학적 강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응답자들에 비해 남성응답자들이 보다 더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지만,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남성응답자들과 여성응답자들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응답자들이 구타동반강간보다 가학적 강간에 대한 처벌에 상대적으로 다소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내강간의 행동특성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의 차이가 감소되어 아내강간의 행동특성이 아내강간의 인식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 정도와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도 및 처벌의 필요성

아내강간 행위 경험(남성) 또는 피경험(여성) 정도에 따라서 아내강간 행위를 수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아내에게 강압적인 성행위를 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응답자들(H)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남성응답자들(L)에 비해 아내강간을 수용하는 정도가 훨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남성의 아내강간 경험에 상관없이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회피적인 태도가 일관성있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의 강압적인 성행위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여성응답자들(H)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여성응답자(L)들 보다 오히려 아내강간 행위에 대한 수용정도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주목하게 한다. 아내강간을 많이 경험한 여성들 자신이 아내강간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저항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내강간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한 임상 개입과 대처방안 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직면하여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배우자의 강압적인 성행위를 배우자의 권리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자신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역기능으로 파생된 그릇된 성규범의 영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된 성행위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여성보다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도 다소 덜 주장하는 경향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아내 강간에 대한 기준 남·여 인식 :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정도와 처벌 필요성

내 용 유형	장간 M(SD)		아내강간 M(SD)		강압에 의한 강간 M(SD)		구타동반강간 M(SD)		가학적 강간 M(SD)			
	남 성	여 성	T(P)	남 성	여 성	T(P)	남 성	여 성	T(P)	남 성	여 성	T(P)
아내강간 수용도	4.879 (2.158)	4.104 (1.703)	2.923*** (1.212)	2.040 (0.986)	1.683 (0.986)	2.371* (0.844)	1.404 (0.723)	1.270 (0.723)	1.238 (0.797)	1.434 (0.540)	1.176 (0.540)	2.761**
처벌 필요성	8.313 (3.281)	7.200 (3.273)	2.524** (1.253)	3.202 (1.241)	2.774 (1.241)	2.543** (1.452)	2.535 (1.292)	2.081 (1.292)	2.439* (1.436)	2.575 (1.544)	2.384 (1.544)	.960

주 : * P<0.05 , ** P<0.01 , *** P<0.005 , **** P<0.0001 . 남성N = 99, 여성N = 125
 처벌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높을수록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방향임.

〈표 4〉 아내 강간 경험(남성) 및 피경험(여성) 정도에 따른 아내강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수용도 및 처벌의 필요성

장간 경험 유무내용	남 성 M(SD)			여 성 M(SD)						
	아내 강간 경험 유무			강간 피경험 유무						
	없 음	N	있 음	N	T(P)	없 음	N	있 음	N	T(P)
아내강간 수용도	3.952 (1.142)	63	6.500 (2.546)	36	-5.6844*** (1.220)	3.668 (1.220)	86	5.026 (2.206)	39	-3.5534***
처벌 필요성	8.016 (3.429)	63	8.833 (2.980)	36	-1.241 (3.534)	6.872 (3.534)	86	7.923 (2.496)	39	-1.9031

주 : * P<0.05 , ** P<0.01 , *** P<0.005 , **** P<0.0001

처벌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높을수록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방향임.

5) 아내강간 성향파악을 위한 예측변인

앞에서 소개한 11개의 사회 계층적 변수들과 2개의 성장시의 가정폭력배경 변수들을 중심으로, 아내강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 변수들을 파악하여 보았다. 먼저 Chi-Square 검증과 단순 상관관계 분석 등의 기초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Logistic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의 월소득, 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그리고 배우자의 신앙생활 등이 주요 예측 변수들로 제시되었다.

Goodness of fit, R^2 값, Wald(χ^2 통계량), 그리고 각 독립변수(들)의 β 검정을 통해 <표 5>에 제시된 모형 1, 2는 모두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강간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률을 P로 정하고 Logit P를 $\log \{e\}$ (상대적으로 강간경험이 적음) / (1 - 상대적으로 강간경험이 적음)으로 할 때, 축소 모델 모형 1에서 나타나는 2가지 예측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log \{p\} &= \log \{e\} (\text{상대적으로 강간 경험이 적음}) / (1 - \text{상대적으로 강간경험이 적음}) \\ &= 1.1696 + 0.6488 (\text{월소득}) - 1.0746 (\text{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end{aligned}$$

모형 1에서 보면, 가계의 월소득이 1단위씩(100만 원부터 400만 원 이상까지 범위임, 1 단위 증가마다 100만 원씩 증가하여 5단위로 구성되었음) 증가할 때마다, 아내강간을 적게 할 가능성(odds)이 약 91% 이상 증가되어 가계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아내강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경규(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박경규는 월소득은 다른 형태의 부부폭력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폭력 발생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1단위씩(전혀 없음, 아주 드물, 가끔, 자주, 대단히 자주 등으로 5단위로 구성됨) 감소할수록, 즉 성장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적을수록 아내강간을 적게 할 가능성(odds)이 약 2.93배씩 증가하고 있다. 성장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아내강간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박경규(1984)의 조사에서는 어린 시절의 폭력경험 자체보다는 폭력관찰 경험이 부부성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 자체가 성인이 되어 부부간의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데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어 폭력 관찰경험이 아닌, 직

〈표 5〉 아내강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파악을 위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B(S.E)	Wald	R	Exp(B)
가계의 월소득	.6488 (.0244)	7.0798**	.4505	1.913
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1.0746 (.0319)	11.312***	-.5014	.341
Goodness of fit		3.2575 df=8 (P=.9172)		
Model χ^2		24.893 df=2 (P=.0001)		
-2 log		123.026		
R^2		.2327		
Max-rescaled R^2		.3188		
모형 2	B(S.E)	Wald	R	EXP(B)
가계의 월소득	.7087 (.2582)	7.5341**	.4426	2.031
배우자의 신앙생활	-.3821 (.2465)	2.4037	.2218	.682
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1.0648 (.3197)	11.091****	-.4698	.345
Goodness of fit		19.078 df=8 (P=.0144)		
Model χ^2		27.372**** df=3 (P=.0001)		
-2 log		123.026		
R^2		.2526		
Max-Rescaled R^2		.3461		

주 : * P<0.05 , ** P<0.01, *** P<0.005, **** P<0.0001

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부부간의 성적 폭력행위 유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 2에서도 가계의 월소득과 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주요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에 비해서는 다소 영향력이 떨어지거나 배우자(아내)의 신앙생활 정도가 비록 χ^2 통계량 검증에서 유의함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유형 II의 세 가지 예측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og \{ p \} &= \log \{ e \} (\text{상대적으로 강간경험이 적음}) / (1 - \text{상대적으로 강간경험이 적음}) \\ &= 2.0001 + 0.7087 (\text{월소득}) - 0.3821 (\text{배우자의 신앙생활 정도}) - 1.0648 (\text{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정도}) \end{aligned}$$

세 가지 예측변수들이 포함된 모형 2의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모형 2에서 가계의 월소득이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아내강간을 적게 할 가능성(odds)이 약 2배가 증가되며, 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1단위씩 감소될수록 아내강간을 적게 할 가능성(odds)이 약 2.9배로 증가한다. 배우자(아내)의 신앙생활이 열심인 정도가 한 단위씩(열심, 보통, 약함, 없음 등의 4단위로 구성됨) 증가할수록 남편이 아내강간을 적게 할 가능성이 약 1.5배 가량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성장시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내가 신앙생활이 약할수록, 아내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남편이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아내의 신앙생활에서의 열심인 정도가 남편의 아내강간 행동 실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은 아내강간 발생이 가해자의 남편의 특성만이 아닌 배우자인 아내의 특성에도 다소간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6) 아내강간 피경험 성향파악을 위한 예측변수

아내강간 피경험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11가지의 사회계층적 변수 및 2개의 성장시 가정폭력배경 변수들을 독립변수들로 설정하였다. 13개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아내강간 피경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먼저 Chi-Square 검증과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록 영향력이 약하나 다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6개의 독립변수들을 선택하였다. 이 6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logit 회귀분석을 하였다. logit 회귀분석 결과, 6개의 독립변수들 중에 생활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Wald(χ^2 통계량) 검증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모형 3의 경우 모델의 적합성이 모형 1, 2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지만 기혼여성의 아내강간 피경험 정도에 다소간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간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 3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계적 logit 회귀분석(Step-wise logit) 결과에서도 생활수준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력이 강한 독립변수로 채택되었다. 생활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짐에 따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약 9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

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빈곤가정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의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이들 집단에 대한 문제 예방과 대처를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생활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독립변수는 비록 그 영향력은 약하나 종속변수에 대한 5개의 독립변수들간의 영향력을 서로 비교해 본다는 의미에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이 성장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을 한 단위씩 적게 받았을 때,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약 1.37배 정도 증가한다. 즉, 기혼여성 자신이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한 경우에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Doron(1980) 과 Frieze(1983)의 연구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대받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무력함(*helplessness*)이 계속 또 다른 학대를 야기하고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강간을 당할 가능성은 많다는 사실은 아내강간 발생이 가해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특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반드시 부부를 함께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6〉 아내강간 피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적 변인 및 성장시 가정폭력배경 변수 파악을 위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모형 3	B(S.E)	Wald	R	Ex(B)
가계의 월소득	.0420 (.2612)	.0258	.02370	1.043
자신의 신앙생활	-.2847 (.3283)	.7519	-.13767	.752
배우자의 신앙생활	-.2439 (.3162)	.5950	-.12533	.782
성장시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	-.3160 (.28642)	1.2171	.13658	.729
본인의 직업	.0977 (.0965)	1.0255	.13233	1.103
생활(경제) 수준	.6760	4.3786*	.31409	1.966
Goodness of fit Model χ^2		9.0712 df=8 (P=.03363) 14.172 df=6 (P=.0278)		
-2 log R ²		139.091 .1209		
Max-rescaled R ²		.1685		

주 : * P<.05

앞서 분석에서 남편의 아내강간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가계의 월소득은 아내의 아내강간 피경험 유무에는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강간을 당하는 데는 생활(경제) 수준이 강력한 영향 변수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부부의 재정상태가 아내강간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사회사업 실천적 함의

첫째, 아내강간이 상당히 만연된 부부폭력 문제로 드러났다. 42.4%의 기혼남성들이 아내강간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6.4%의 남성들이 강압적 강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행동 특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심각한 형태의 아내강간인 구타동반강간(12.1%)과 가학적 강간(10.4%)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어 아내강간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둘째, 아내강간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적 배경변수 및 성장시 가정배경 변수로는, 가계의 월수입, 성장시의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 주요영향 변수로 확인되었고, 아내의 신앙생활 수준도 남편의 아내강간 행위 실행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낮은 기혼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셋째, 아내강간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혼 남녀 모두 아내강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기혼남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이 아내강간에 대해 여전히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행동특성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강압적 강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아내강간 행위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처벌의 필요성은 아내강간의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기혼남성에 비해 기혼여성들이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 행동특성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강압적 강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행동특성이 심각한 구타강간 및 가학적 강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약화되었다. 행동특성이 아내강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아내강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행한 남성과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여성이 아내강간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 문제로 제기된다.

이상의 발견된 사실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주요시사점과 사회사업 실천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빈곤층의 기혼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비인격적이 고 폭력적인 강간을 당하기 쉬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부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아내강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기혼남성들을 위한 개입이 요청된다. 재정관리 및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혼남성들이 보다 바람직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장시에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많이 경험한 남성이 아내강간 성향이 높다는 사실은 폭력이 학습됨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비록 그 영향력은 약하나, 마찬 가지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강간을 더 많이 당하고 있는 경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성장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많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아내강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의 신앙생활 수준이 좋을수록 아내강간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다소 나타나, 부부의 정신적 삶(spiritual life)의 향상이 아내강간과 같은 부부폭력 예방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에 비전문적 또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회피한 종교적 영성의 활용이 최근 사회사업 실천방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부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훈련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내강간 경험(남성)과 피경험(여성)이 많을수록 아내강간을 수용하는 경향은 매우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특히 아내강간의 피해자인 기혼여성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아내강간을 한 기혼남성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없고, 배우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인 여성 자신이 문제에 대한 의식화(consciousness)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암담한 현상이다. 아내강간 문제 관련 클라이언트를 돋기 위한 사회사업실천 개입시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임상적 관심사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의미 깊고 친밀한 대상으로 간주되는 배우자로부터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제받으면서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크게 손상되어 심리적인 무력감을 가지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해석된다. 여성의 무력감은 비단 부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성규범의 틀 속에서 여성으로서 인식하는 무력감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내강간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개입을 넘어서, 결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강압적인 성행위를 남성들의 권리로, 그리고 여성들의 의무로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성규범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개선의 노력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에서의 개입으로는 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돋기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소규모집단 단위의 의식화훈련(*consciousness raising*)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바른 성규범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보급은 서비스의 이용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 사회복지관이 주체가 되어 활성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아내강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남성과 여성의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인 성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현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아내강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남성들의 두드러진 자기방어적인 반응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내강간에 대한 남성들의 책임회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아내 강간 문제가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 아내 강간 가해자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에서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강제되는 아내강간 행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아내강간에 대한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이기 때문이다. 아내강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정의가 설정될 때, 아내강간에 대해 개인들 각자가 보다 건강한 개인적 정의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문제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부부 어느 한쪽의 개인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부부 상호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진전을 평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내강간 문제에 대한 개척 연구로서, 아내강간 문제의 일부분만 다루는 데 그쳤다.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각

도에서 체계적으로 아내강간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활발한 후속 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한층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재엽. 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pp. 111~112.
- 박동섭. 1996. “성규범과 법적통제에서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현대사회와 성 윤리》 제8회 사회윤리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제4분과. 아산복지 사업재단. p. IV-27.
-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교우관계 분석.” 박사 학위 논문. 효성여자대학교.
- 손정영. 1997. “갈등대처 유형척도(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연구 : 남편의 갈등 대처 유형 및 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pp. 51~87.
- 손정영. 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박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신성자. 1997(a).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2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 181~211.
- _____. 1999(b). “부부의 열등감, 성역할 태도와 스트레스가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족사회복지학》 제4호. pp. 117~150.
- 장혜순. 1995. “가정폭력이 자녀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Campbell, J. C., & Alford, P. 1989. “The Dark Consequences of Marital Rap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pp. 946~949.
- Campbell, J. C. 1989. “Women’s Responses to Sexu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Health care for women’s International*, Vol. 10. pp. 335~346
- Doron, B. Julie. 1980. “Conflict &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 Focus on Marital Rape.” Paper present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 Meeting, New York.
- Finkelhor, D., & Yllo, K. 1985. *License to rape: Sexual Abuse of Wife*.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Frieze, I. H. 1983. “Investigating the Causes & Consequence of Marital Rape ·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 Society*, Vol. 8. pp. 552~553.

- Gelles, R. 1977. "Power, Sex, and Violence: the Case of Marital Rape." *The Family Coordinator*. Vol. 26.
- Hanneke, C., & Shields, N. 1985. "Marital Rape: Implications for Helping Professionals." *Journal of Social Casework*. pp. 451~458
- Kelly, L.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elly, L. 1990. "How Women Define Their Experiences of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36. pp. 114~131.
- Kennedy, Raque Kergen. 1996. *Wife Rape: Understanding the Response of Survivors and Service Providers*. Sage Series on Violence Against Women.
- Peacock. 1995. "Marital Rape." In V. Wiehe & Richards(eds.), *Intimate Betrayal*. Thousand Oaks, CA : Sage. pp. 55~73.
- Russell, E. E. H. 1990. *Rape in Marriage*,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 Weinstein, Estelle. 1988. *Sexuality Counseling: Issues & Implications*, Brooks/Cole Publishing Co.

A Study of the Prevalence, Correlates and Perceptions on Wife Rape

Shin, Sung Ja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As a pioneering study on wife rape,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prevalence, the correlates of the individual social class and domestic violence background, and the perception of wife rape. This study uses the data based on the survey 224 married men and women who reside in Daegu,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bout 42.4 % married men have experienced any type of wife rape. The most prevalent wife rape is force only wife rape (36.4%). Battering rape(12.1%) and sadistic rape(10.4%) are also found as significant coercive sexual issue among Korean couples.

Monthly income and child abuse experience are found as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wife rape of married men. In addition, wife's religious enthusiasm i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wife rape propensity, although the effect is not strong. The living standards is found as a strong correlate of women's propensity of being raped from their husbands. Thus, our practic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in low economic status, and to those who have significant child abuse experience, in order to prevent wife rape.

Overall, married men and married women show pretty negative perceptions of wife rape, however, some of them are still positive of it. It is interesting that married men show a very defensive attitude against the proposal of establishing legal punishment for the people who commit wife rape. According to the gender,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both the degree of acceptance of, and the demand for legal punishment of wife rape. It is problematic that the married women with a greater experience of being raped by husbands show far greater tolerance of wife rape than those with a less experience of it. These findings give us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